제98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신재생에너지(바이오매스)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(강화) ○ 사업자 유형, 운전방식(전/혼소), 운전연차에 따라 가중치 조정 (공급의무자 그룹Ⅰ) ❶전소설비: '25년부터 '27년까지 순차 조정* * REC 가중치 : ('25년) 1.0 → ('26년) 0.75 → ('27년~) 0.5 ❷혼소설비: '25년부터 가중치 0 적용(REC 미발급) (그 外 발전사업자) '26년(1년 유예)부터 운전연차에 따라 조정 ▶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 제3조	1.중요
2	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경찰청)	1.수상레저기구의 속도 제한구역 추가(신설) ○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(별표11) "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"에서 수상레저기구의 속도를 제한하는 위험구역에 방파제 추가 - (현행) 다이빙대,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로 운항 - (개정안) 방파제, 다이빙대,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로 운항 ▶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0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신설) ㅇ 보험가입관리전산망 보험관련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) 처리 규정 시행령 추가 ▶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 ▶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	
3	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주택가격산정 방식(강화) ㅇ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 및 보증기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, 이의가 있을 경우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액 사용 가능 ▶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	1.중요
4	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(강화) ㅇ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140%로 일원화 ▶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전체	1.중요
5	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(국토교통부)	1.이륜자동차의 검사(재검사) 대상 및 검사신청(신설)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* 적용 대상 규정 및 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, 제출처 등 규정 * 사용검사,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이륜자동차 재검사 신청 기간, 기간 산정 방법 등 규정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 2.이륜자동차의 검사 기준 및 방법(신설) ○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별표1 등에 따르도록 함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3.이륜자동차 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(신설) ○ 이륜자동차검사의 주기 및 검사유효기간, 기간 기산 방법 규정 ○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 및 방법 규정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, 제12조 4.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등(신설) ○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· 장비 · 기술인력 기준을 규정 ○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 및 절차 등 규정	6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·폐업 신고 절차 및 지정취소·통보, 기술인력 확보 등 규정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5.기술인력의 교육 등(신설) ○ 검사원 교육의 대상, 내용, 주기에 대한 기준을 규정 ○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○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지정해제 사유·절차를 규정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, 제26조, 제27조 6.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 ○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,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,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정 ▶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	
6	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우주항공청)	1.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(신설)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(별표 1) 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에 해당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(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업종) 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③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(제조업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(「기술사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)을 수행하는 사업, 전기통신업,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,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종 또는 사업)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①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② 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③ 별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▶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▶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4 2.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신청 요건(신설) ㅇ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혹은 지정 변경 시 필요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. - 투자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히야하는 사업계획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. -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 혹은 지정 변경 신청하여야 함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투자자가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내용, 고용규모, 재원조달 계획,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▶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▶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5, 제21조의6 3.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(신설)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조건 지정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 이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투자 미완료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 그 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,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함 ②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는 1)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거나, 2)투자자의 사업참여 기피 또는 투자자의 투자 계획이 철회될 경우로 정함 ③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(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)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이에 대한 통보 –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이를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,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·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. ▶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3▶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8	
7	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강화(신설) ㅇ 입양대상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양부모가 될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*이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성범죄, 마약 등 관련 범죄경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신설 *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 하고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, 실질적으로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▶입양특례법 제10조▶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
8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(신설) ㅇ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▶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	1.비중요
9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(신설) ㅇ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에 공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 ▶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	
10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여성가족부)	1.상담기록의 보관기간 (강화) ㅇ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일 경우 영구, 성폭력처벌법 제14조,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관련일 경우 10년으로 규정 ▶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	1.비중요
11	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가유산청)	1.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추가(신설) ㅇ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8시간 이수 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▶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	1.비중요
12	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조성계획의 승인신청(신설) ㅇ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절차를 규정 –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절차를 정함 ▶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(신설) ㅇ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–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,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, 토지 매입 승인신청을 위해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제출하는 서류와 그 절차를 정함 ▶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3 3.준공검사(신설) ㅇ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검사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 –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▶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	
13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체육시설업자의 휴 · 폐업 통보 내용 및 방법(신설) ㅇ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휴 · 폐업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방법을 규정함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▶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	1.비중요